

농 어 촌 정 비 법
시 행 규 칙 일 부 개 정 령 안

2019. 3.

농 립 축 산 식 품 부
(농 촌 산 업 과)

법 제 처 심 사 전

1. 개정 이유

작년 강릉펜션사고가 발생하여 소비자들의 농어촌민박의 안전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으며, 주택에서 하는 사업이란 특성때문에 농어촌민박의 안전시설 설치 기준은 다른 숙박업에 비하여 완화되어 있는 상태임.

그러나 농어촌민박은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로 관리기준과 안전시설 설치 등 안전부분에 있어서 일반 숙박업 수준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안전관리기준 및 시설 기준과 안전교육 비중을 강화하여 농어촌민박의 안전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해소 하고, 농어촌민박이 농촌 주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신고 전 서비스·안전 교육 수료 의무화(안 제49조제1항제3호 신설)

농어촌민박업 신고 후부터 교육을 시행하기 전까지 서비스·안전 교육을 수료하지 않고 사업을 운영하는 기간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서비스·안전 교육 수료증을 농어촌민박 신고 시 제출하도록 함.

나. 소방·안전교육시간 연 1시간에서 2시간으로 확대(안 제49조의2제2항 개정)

소방·안전에 대하여 상세하고 실효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 1시간에서 2시간으로 교육시간 확대

다.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교육 일정 공지(안 제49조의2제3항 개정)

서비스·안전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국민들이 교육 일정 정보에 쉽게 접근 가능하도록 한 해의 교육일정을 공지하도록 함

라.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 강화(안 별표3 개정)

- 1) 객실마다 휴대용비상조명등 설치 의무화
- 2) 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피난유도표지를 설치하고 1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피난유도등 설치
- 3) 다층건물의 효과적인 대피를 위하여 150제곱미터 초과하면서 3층 이상의 건물에는 3층부터 객실마다 완강기를 설치
- 4) 난방 및 화기취급처 안전시설 설치 규정 신설
 - 화기취급처에 일산화탄소경보기 및 가스누설경보기, 소화기 및 자동확산소화기 설치
 - 객실마다 일산화탄소경보기 설치

마. 농어촌민박사업의 서비스·안전기준 개정(안 별표3의2 개정)

- 1)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소방안전, 난방시설 및 화기취급처 안전기준 추가
- 2) 새롭게 설치 의무화된 자동확산소화기, 휴대용비상조명등, 일산화탄소경보기 등에 대한 관리 의무 규정

바. 농어촌민박사업 신고서 개정(안 별지 제75호 서식 개정)

신고 내역에 새롭게 추가된 안전시설 현황과 신고 시 제출서류에 서비스·안전교육 수료증 추가

사. 농어촌민박사업자 관리대장 개정(안 별지 제80호서식 개정)

- 1) 화재가 발생하기 쉬운 난방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현황을 기재하도록 함
- 2) 새롭게 설치 의무화된 자동확산소화기, 휴대용비상조명등, 피난유도등(표지), 완강기 관련 내용 추가
- 2) 난방안전시설의 경우 환기시설설치 여부, 가스누설경보기, 일산화탄소경보기 설치 현황 기재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양수산부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교육 수료증

제49조의2제2항 중 “소방·안전, 식품위생,”을 “소방·안전 교육 2시간, 식품위생 및”으로, “각각 1시간씩”을 “1시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통보”를 “통보하고, 한 해의 교육일정을 모두가 볼 수 있도록 공지”로 한다.

별표 3 제2호 농어촌민박사업 기본시설 중 “화재예방”을 “제3조에 따른 능력단위이상의 소화기”를 “휴대용비상조명등”을 추가하고 “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피난유도표지를 설치하고 면적이 1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피난유도등을 설치할 것”과 “150제곱미터를 초과하면서 3층 이상의 건물에는 3층부터 객실마다 완강기를 설치할 것”으로 한다.

별표 3 제2호 농어촌민박사업 난방기 및 화기취급처 안전시설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보일러실·주방 등 화기취급처에는 일산화탄소경보기 및 가스누설경보기(가스보일러 사용 시), 소화기 및 자동확산소화기를 설치할 것”과

“나. 객실마다 일산화탄소경보기를 설치할 것(다만, 객실과 연소기가 분리되어 일산화탄소 유입위험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별표 3의2 제3호가,나,다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가. 소화기, 피난유도등(표지), 단독경보형감지기, 일산화탄소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휴대용비상조명등은 작동가능토록 유지·관리할 것”

“나. 건전지를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 및 일산화탄소경보기, 휴대용비상조명등은 정상적인 작동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건전지를 교환할 것”

“다. 소화기 및 휴대용비상조명등은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할 것”

별표 3의2 제4호가,나,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난방으로 사용되는 화기취급처에는 가스누설경보기(가스보일러 사용 시) 및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하고 정상 작동하도록 관리할 것”

“나. 화기취급처에는 환기 시설 설치 또는 환기가 잘 되도록하고 가연성 물질을 가까이 두지 말 것”

“다. 난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유지·관리할 것”

별지 제75호서식 앞쪽 중 소방시설“자동확산소화기, 휴대용비상조명등, 피난유도등, 완강기” 내용을 추가하고, 난방안전시설“가스누설경보기, 일산화탄소경보기”를 신설한다

별지 제75호서식 뒤쪽 “신고인첨부서류 중 3호 농어촌민박서비스·안전교육수료증” 신설한다

별지 제80호서식에 “난방시설 현황”과 “난방안전시설 현황”을 신설하고, 소방시설에 “자동확산소화기, 휴대용비상조명등, 피난유도등(표지), 완강기”를 추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3의 개정규정은 2019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설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2조제16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민박업을 하고 있는 자는 별표3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 및 설비를 2019년 11월30일까지 갖추어야 한다. 다만, 면적이 150㎡를 초과하면서, 2020년 1월1일 이전에 착공한 농어촌민박의 경우에는 피난유도등 대신에 피난유도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제3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9조(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등) ① 법 제86조제1항 전단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75호서식의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것을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1. 2. (생 략)</p> <p><u><신 설></u></p> <p>② ~ ⑤ (생 략)</p>	<p>제49조(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등) ① -----</p> <p>-----</p> <p>-----</p> <p>-----</p> <p>-----</p> <p>-----</p> <p>-----</p> <p>-----</p> <p>-----</p> <p>-----</p> <p>-----</p> <p>1. 2. (현행과 같음)</p> <p><u>3.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교육 수료증</u></p> <p>② ~ ⑤ (현행과 같음)</p>
<p>제49조의2(서비스·안전기준 및 교육) ① (생 략)</p> <p>② 법 제86조의2제2호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촌민박사업자를 대상으로 서비스·안전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3시간 실시하되, <u>소방·안전, 식품위생</u>, 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각각 1시간씩 실시하여야 한다.</p> <p>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p>	<p>제49조의2(서비스·안전기준 및 교육) ① (현행과 같음)</p> <p>② -----</p> <p>-----</p> <p>-----</p> <p>-----</p> <p>----- 소</p> <p><u>방·안전 교육 2시간, 식품위생</u> 및 ----- <u>1시간</u> -----</p> <p>-----</p> <p>③ -----</p>

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47조 관련)

1. 사업의 규모

구 분	규 모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	○ 1만5천제곱미터 이상 100만제곱미터 미만
관 광 농 원 사 업	○ 10만제곱미터 미만
농 어 촌 민 박 사 업	○ 주택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 다만,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주택의 경우에는 규모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2. 시설기준

구 분	시설의 종류	시 설 기 준
농 어 촌 관 광 휴 양 단 지 사 업	농어업전시관 (기본시설)	○ 농기구 등 농어업 관련 장비와 사진 등을 전시하기에 적합한 시설로서 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일 것
	학습관 (기본시설)	○ 학습에 필요한 책상과 의자 등을 갖춘 시설로서 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일 것. 다만, 농어업전시관이 학습관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학습관을 따로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지역특산물 판매시설	○ 지역농수산물이나 특산물의 전시와 판매를 위한 시설로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해당 시설의 기준에 적합할 것
	체 육 시 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한 해당 시설의 기준에 적합할 것
	휴 양 시 설	○ 원두막이나 낚시터 등 이용객에게 휴식을 제공할 수 있는 시설
관 광 농 원	그 밖의 시설	○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
	영농체험시설 (기본시설)	○ 식량작물·특용작물·약용작물·채소·과수·화훼·유실수·버섯 등이 입식된 농장, 저수지·조류사육장·초지·축사·양어장·유리하우스(비닐하우스를 포함한다)·분재원 등 농수산물 생산을 위한 토지와 시설(자연림·자연초지 또는 야생화 등의 자생지는 제외한다) 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면서 관광농원 개발 승인 면적의 100분의 20 이상일 것
	지역특산물	○ 지역농수산물이나 특산물의 전시 및 판매를 위한 시설로서

<p>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1개월 전에 농어촌민박사업자에게 교육일을 <u>통보</u>하여야 한다.</p>	<p>----- ----- ----- <u>통보</u>하고, 한 해의 교육 일정을 모두가 볼 수 있도록 <u>공지</u>-----.</p>
④ ~ ⑦ (생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사 업	판매시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해당 사업의 기준에 적합할 것
	체육시설	○ 영 제84조제1항 각 호의 영업시설로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한 해당 시설의 기준에 적합할 것
	휴양시설	○ 원두막이나 낚시터 등 이용객에게 휴식을 제공할 수 있는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음식물 제공시설	○ 영 제84조제2항 각 호의 영업시설로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해당 시설의 기준에 적합할 것
기타시설	○ 관광농원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농 어 촌 민 박 사 업	기본시설	○ 객실마다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능력단위이상의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와 휴대용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 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피난유도표지를 설치하고, 면적이 1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피난유도등을 설치할 것 ○ 150제곱미터를 초과하면서 3층 이상의 건물에는 3층부터 객실마다 완강기를 설치할 것
	조식제공시설(조식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해당)	가. 음식의 원재료의 보관을 위하여 냉장고 등의 시설을 갖출 것 나. 음식을 조리하는 경우에는 위생적으로 조리·세척하는 시설을 갖출 것 다. 주방에는 환기를 위한 시설을 갖출 것. 다만, 창문이 있거나 자연적으로 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라. 수도물(「수도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수도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소규모급수시설에서 공급되는 물을 말한다)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
		※ 위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요건 외에 필요한 시설기준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음
난방기 (가스, 기름, 화목, 연탄보일러 등 연소난방기 있는 경우) 및 화기취급처 안전시설	가. 보일러실·주방 등 화기취급처에는 일산화탄소경보기 및 가스누설경보기(가스보일러 사용 시)설치할 것	
	나. 객실마다 일산화탄소경보기를 설치할 것(다만, 객실과 연소가 분리되어 일산화탄소 유입위험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보일러실·주방 등 화기취급처에는 소화기 및 자동확산소화기를 설치할 것	

※ 비고: "기본시설"이란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사업시행자가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시설을 말한다.

농어촌민박사업의 서비스·안전기준(제49조의2 관련)

구분	서비스·안전기준
1. 숙박 위생	가. 객실·접객시설·복도·계단·욕실·샤워시설·세면시설 및 화장실 등 전체 시설을 수시로 청소하고, 매일 1회 이상 전체 소독을 실시할 것 나. 이불·베개 등 침구류와 수건은 숙박자가 사용할 때마다 세탁하고, 수시로 햇빛에 건조하거나 기계로 건조할 것 다. 환기를 위한 시설 또는 창문을 설치하고 수시로 환기할 것
2. 식품 위생	가. 주방은 식품위생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청결하게 유지·관리할 것 나. 조리를 할 때에는 개인위생을 유지하고, 조리에서 사용되는 도마, 칼, 행주 등 주방도구는 사용 후에 끓이거나 기계를 사용하여 세척·살균하는 등 청결하게 유지·관리할 것 다. 부패 및 변질되기 쉬운 식품 등은 냉동·냉장시설에 보관하여 관리할 것 라. 객실에는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먹는물을 갖춰두도록 하고, 이를 위생적으로 관리할 것
3. 소방 안전	가. 소화기, 피난유도등(표지), 단독경보형감지기, 일산화탄소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휴대용비상조명등은 작동가능토록 유지·관리할 것 나. 건전지를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 및 일산화탄소경보기, 휴대용비상조명등은 정상적인 작동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건전지를 교환할 것 다. 소화기 및 휴대용비상조명등은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할 것
4. 난방 시설 및 화기 취급처 안전	가. 난방으로 사용되는 화기취급처에는 가스누설경보기(가스보일러 사용 시) 및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하고 정상 작동하도록 관리할 것 나. 화기취급처에는 환기 시설 설치 또는 환기가 잘 되도록 하고 가연성 물질을 가까이 두지 말 것 다. 난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유지·관리할 것
4. 그 밖 의 사 항	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성매매알선 등 금지행위를 하지 말 것 나. 청소년(「청소년 보호법」에서 ¹² 정한 청소년을 말한다)에 대하여 이성혼 등 풍기를 무라하게 하는 연연행위를 하지 말 것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소유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 전입일		
	주소	전화번호			
민박 소재지				민박 명칭	
대지 면적	㎡	용도지역(지구)	하수처리구역 여부 [] 구역 내 [] 구역 외		
주택 연면적	㎡	전체 방 수(면적)	객실 수(면적)		
조식 제공	[] 제공 [] 미 제공				
시 설	건물형태	[] 단 독 [] 다가구	주택 내 화장실 수	주택 내 취사시설 수	
	식 수	[] 상수도 [] 지하수 [] 기 타	화장실 [] 수세식 [] 재래식		
	우수처리시설	용량 : ㎡/일	설치연도:		
	단독정화조	용량 : 인용/일	설치연도:		
	소방시설	소화기 : 대 자동화산소화기 : 대 피난유도등 [] 표지 [] :	단독경보형감지기 : 대 휴대용비상조명등 : 대 완강기 : 대		
	조식제공시설	냉장고 : 대 환기시설 : [] 설치 [] 미설치	조리·세척시설 : [] 설치 [] 미설치	급수 시설 : [] 수돗물 [] 지하수	
난방안전시설	가스누설경보기 : 대	일산화탄소경보기 : 대			

「농어촌정비법」 제8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농어촌민박사업자 관리대장

신고인(대표자) 첨부서류	1.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고인이 주택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만 제출, 전자문서를 포함) 2.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최근 2년 이내 수질검사성적서 1부(조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를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3.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교육 수료증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표 초본 2. 건축물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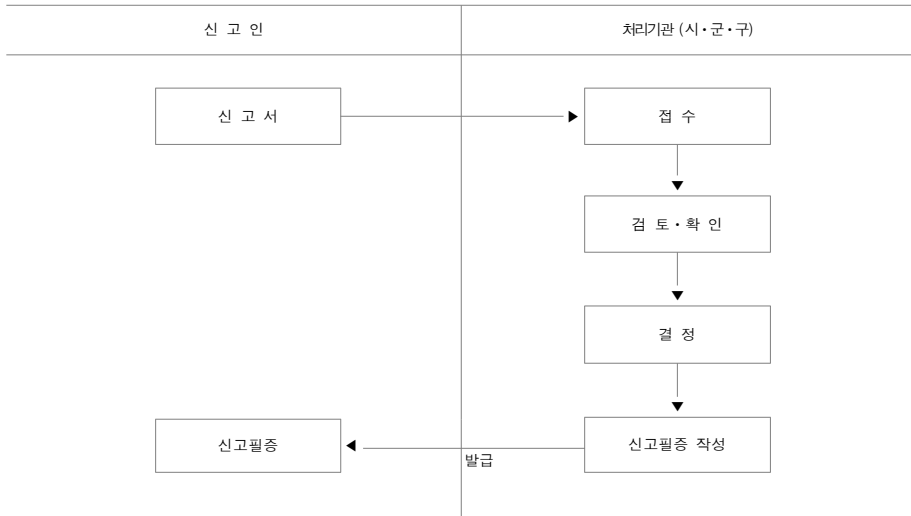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민박 명칭				신고번호	
소 유 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			
운 영 자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전입일		
	주소	(전화:)			
민박 소재지			민박 명칭		
대지 면적	용도지역(지구)	하수처리구역 여부			
	m ²	[]구역 내 []구역 외			
주택 면적	전체 방 수(면적)	객실 수(면적)			
	m ²	개 (m ²)	개 (m ²)		
조식 제공	[] 제공 [] 미제공				
시 설	건물 형태	주택 내 화장실 수	주택 내 취사시설 수		
	[] 단독 [] 다가구				
	식 수	화장실			
	[] 상수도 [] 지하수 [] 기타	[] 수세식 [] 재래식			
	난방시설 총 대				
	[] 가스 [] 기름 [] 화목 [] 연탄 [] 전기 [] 기타				
	오수처리시설				
	용량:	m ³ /일	설치연도:		
	단독정화조				
	용량:	인용/일	설치연도:		
소방시설					
소화기 :	대	단독경보형감지기 :	대		
자동확산소화기 :	대	휴대용비상조명등 :	대		
피난유도등 [] 표지 [] :	개	환기기 :	대		
* 그 밖의 소방시설에 대해서는 별도 기재					
조식제공시설					
냉장고:	대	조리·세척시설 :	[] 설치 [] 미설치		
환기시설 :	[] 설치 [] 미설치	급수시설 :	[] 수돗물 [] 지하수		
난방안전시설					
가스누설경보기 :	대	환기시설 :	[] 설치 [] 미설치		
		일산화탄소감지기 :	대		
특기사항					
사 진					
작성일자	소속	직위	성명	작성일	

* 특기사항란은 농어촌민박과 관련하여 참고가 될 만한 사항을 적음.

